

2026년 상반기 서울경제진흥원-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

□ 지원개요

- **(목적)** 서울경제진흥원(이하 “SBA”) 추천을 받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대폭 강화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서울시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
- **(지원규모)** 10개社 내외
- **(지원대상)** SBA 추천을 받은 중점발굴대상 창업기업*

*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서(제출서류 참조) 통해 확인

중점발굴대상 기업

㉠ 유망업종 영위기업

-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[참고1]
(AI, Bio, Contents & Culture, Defense, Energy, Factory)
- 혁신성장산업(제6차 혁신성장 공동기준) 영위기업

㉡ 기술주도형 스타트업

- 대학, 연구기관, 대·중견기업 연구소 재직·퇴직자가 창업한 우수 기술기업
- 우수기술 청년창업기업,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기업
-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술기업

□ 지원 제외대상

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,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㉠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(보증금지·제한기업)[참고2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3] 해당 시
- ㉡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4] 해당 시
- ㉢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
- ㉣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

-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보증기관(기보·신보·보증재단) 이용 중인 기업이 본 공모 신청을 희망할 경우,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 후 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

| 구 분 |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--|------|--|
| 금융 지원 | 대상자금 | ▶ 자금융도 : 운전자금 (최대 30억 한도) |
| | 우대사항 | ▶ 보증비율 : 100% 적용 ▶ 보증료율 : 0.7% 고정보증료 ▶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|
| 비금융 연계 지원* | | ▶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▶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▶ 적극적인 홍보지원 (선정기업,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, 블로그 게시 등) |

*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

□ 선정절차

| 단 계 | 주요 내용 | 일 정 | 수행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온라인 신청·접수 | ▶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 | '26.2.9.(월) ~ '26.3.5.(목) 15시 | S B A |
| 1차평가 (추천심사) | ▶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 | '26.3월 | |
| 2차평가 (요건검토·서면평가) | ▶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| '26.3월 | 기 보 |
| 3차평가 (평가위원단) | ▶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*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| '26.4월 | |
| 최종평가 (기술평가·보증심사) | ▶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| '26.4월~5월 | |
| 최종선정 및 보증지원 | ▶ 최종 선정기업 발표 후 보증지원 | '26.6월 | |

※ 선정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·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3. 5. (목) **15시** (기한 엄수)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| 항 목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--|--|
| 신청 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 접수 * '26. 3. 5.(목) 15:00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·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|
| 제출 서류 [필수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술사업계획서[별첨1] ② 주주명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법인기업: 법인, 대표자 / 개인기업: 대표자) ④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⑤ 표준재무제표증명 (4개년('21~'24), 발급가능한 범위에 한해 제출)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'25년 신고분)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시 rnd.or.kr에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하여 발급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(2026.01.31.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"동일하게" 지정하실 것 - <검색기준 2026.01.31.~2026.01.31. 자>로 발급 ⑨ 서면평가 근거자료[별첨2] (연구개발책임자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, 기술완성도 관련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첨2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⑩ 창업기업 확인서 (cert.k-startup.go.kr에서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(규정상 기일)이 소요됨 -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-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'에서 신청 필요 -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'26. 3. 12.(목)까지 제출 가능 <p>※ ②, ③, ④, ⑦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</p> |
| [선택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⑪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(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) |

- (의무이행사항) 최종평가 대상기업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(추후 안내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예정 공모 안내

-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의 경우, 'SBA 맞춤형 Kibo-Star밸리기업 지원공모'('26.2.23. 공고 예정)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모와 예정 공모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예정 공모 관련사항은 '기술보증기금'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.

□ 유의사항

- 본 지원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.
- 공고에 따른 지원내용은 지원시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기술보증기금의 최종평가(기술평가·보증심사)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,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□ 문의처

- **(접수문의)**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
(02-361-5409, hkkim@sba.seoul.kr)
- **(상품문의)**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
(02-3215-5996, istartup@kibo.or.kr)

- 별첨 1. 기술사업계획서(양식)
2. 서면평가 근거자료(양식)

- 참고 1.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
2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
3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4.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| 6대 분야 | 22대 세부산업 | 상세 내용 |
|---|---------------|--|
| AI·첨단 네트워크 (AI) | ① AI·AX | • 인공지능, 머신러닝,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 |
| | ② 빅데이터 | •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,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|
| | ③ 차세대 모빌리티 | • 자율주행, UAM,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 |
| | ④ 차세대 보안·네트워크 | • 5G·6G 및 통신인프라, 사물인터넷, 에지컴퓨팅, 클라우드 컴퓨팅, 보안, 복호화 등 보안·네트워크 산업 |
| | ⑤ 양자기술 | • 양자컴퓨터, 양자통신,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|
| 바이오· 뷰티 (BIO) | ⑥ 레드바이오 | • 제약·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|
| | ⑦ 그린, 화이트바이오 | • 농업·식품분야(그린) 및 친환경분야(화이트) 바이오 산업 |
| | ⑧ 디지털 헬스케어 | • 원격의료, 디지털치료제,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|
| | ⑨ 뷰티테크 | • 혁신형 화장품,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 |
| 문화콘텐츠· 서비스· 디지털 (Culture, Contents) | ⑩ 문화콘텐츠 | • K-콘텐츠·컬처, 웹툰,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|
| | ⑪ 혁신형 지식서비스 | • 공유경제플랫폼, 핀테크,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|
| 방산 (Defense) | ⑫ 우주항공·해양 | • 우주항공(인공위성, 드론 등)·해양(첨단선박, 화물창 등) 관련 산업 |
| | ⑬ 첨단 방위산업 | • 드론, 지능형무기,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 |
| | ⑭ 방산기반산업 | • 엔진, 추진체,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 |
| 에너지·환경 (Energy) | ⑮ 차세대 원자력 | • 소형모듈원전(SMR) 등 차세대 원전 산업 |
| | ⑯ 신재생에너지 | • 수소에너지, 태양광, 풍력,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|
| | ⑰ 에너지 인프라 | • 차세대 전력망(스마트그리드 등), 고압직류송전(HVDC), 에너지 저장장치,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|
| 첨단제조 (Factory) | ⑱ 소재/부품/장비 | •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|
| | ⑲ 로봇 | • 정밀제어, 지능형 로봇,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 |
| | ⑳ 차세대 반도체 | • AI반도체, 전력반도체,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 |
| | ㉑ 차세대 디스플레이 | • OLED, 마이크로 LED,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|
| | ㉒ 차세대 배터리 | • 이차전지, 리튬황,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|

< 보증금지기업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
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- 가. 대표자
 - 나. 실제경영자
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*
 - 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
8. "금융부조리 관련 기업"*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.
 - 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「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」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'보증금지기업'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 - 마.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'보증금지기업'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
14. 제12호 기업(마목 제외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참고3

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| 구 분 | 세부업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10차 | 11차 |
| 도박 게임 관련 | 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| 3340 | 3340 |
| | 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| 46463, 47640 | 46463, 47640 |
| | · 도박기계 임대업 | 69390 | 76390 |
| | 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| 75999 | 75995, 75999 |
| | 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 91113 | 91113 |
| | ·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 91242, 91249 |
| 사치 향락 관련 | · 주류 및 담배 중개업 | 46102 | 46102 |
| | · 귀금속 중개업 | 46109 | 46107 |
| | ·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| 46331, 47221 | 46331, 47231, 46333, 47232 |
| | · 귀금속 도소매업 | 46492, 47830 | 46492, 47830 |
| | · 주점업 | 5621 | 5621 |
| | · 노래연습장 운영업 | 91223 | 91223 |
| | · 무도장 운영업 | 91291 | 91291 |
| | · 마사지업 | 96122 | 96122 |
| 부동산 관련 | · 주거용 건물 임대업 | 68111 | 68111 |
| | 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| 68121 | 68121 |
| | 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 | 68221, 68222 | 68221, 68222 |
| 기타 | 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| 59142 | 59142 |
| | · 전화방 | 91229 | 91229 |
| | 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 | 91241 | 91241 |
| | 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| 96992 | 96992 |
| | | | |

참고4

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| 구 분 | 세부항목 |
|---|--|
| 결격요건 (1개라도 "부"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) |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※ 다만,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|
| | ② 실제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2년 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|
| |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|
| | ④ 실제경영자(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)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|